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3. 31.(월)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한시 면제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

-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 30.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산청군(3.22.),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3.24.)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3.27.)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적용 업무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 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다만, 법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시 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함

- ☐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 법무부는 '25. 3. 28.(금)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주현 (02-2110-4070)
		담당자	사무관	유수열 (02-2110-405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산불 피해지역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2025. 2.월말 기준)

구분	계	울산	경남		경북				
		울주군	하동군	산청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체류외국인	18,578	11,448	968	1,148	1406	2,139	253	318	898

※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

☐ 산불 피해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단위: 명, 2025. 2.월말 기준)

구분	계	경남		경북				
		하동군	산청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25년 배정	4,152	445	228	88	979	1,264	557	591
'25년 입국	125	70	47	0	0	0	6	2
계절근로자	861	355	178	124	85	51	45	23